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秦 榮 一*

目 次

- I. 머리말
- II. 耽羅國星主
 - 1. 耽羅國과 時代區分 문제
 - 2. 耽羅國과 朝貢
- III. 皇帝와 諸侯
 - 1. 耽羅: 諸侯國
 - 2. 耽羅國: 外官 그리고 反亂
- IV. 맺음말

I. 머리말

濟州島가 高麗時代(918-1391)에 어떤 역사적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생각 이외로 부진한 편이다. 물론 여러 개설서들에서 고대와 조선시대의 제주도를 잇는 중간 연결시기로서 고려시대 本島에 관한 언급들은 있어 왔다¹⁾. 그러나 이 시기의 濟州島가 고려왕조와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개 저술들은 이 당시 본도가 肅宗 10년(1105)에 「耽羅郡」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高麗國의 한 郡縣으로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고려왕조 탐라국에 관하여는 高昌錫 교수가 집필한 제3장 中世史(濟州道文化藝術擔當官, 「濟州道誌」第1卷, 第二篇 歷史; 이하 이 책은 「濟州道誌」로 略記하겠다)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 중세사 부문은 고창석 교수가 고려조 탐라국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편입하게 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²⁾. 그리고 毅宗朝(1147-1169)에 耽羅郡이 「耽羅縣」으로 정치적 격하되었다고 한다³⁾. 이렇게 본도는 탐라군·탐라현으로서 高麗王廷에 예속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京來官이 파견되어 왔으며, 그들의 존재가 각종 민폐와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한다⁴⁾.

그러나 고려 말기까지도 耽羅國이라는 독자적인 실체가 있었으며,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外官과 더불어 星主·王子라는 지방 토착적인 지배층이 역사 사료상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⁵⁾. 그러므로 우선 필자는 肅宗 10년에 耽羅郡 설치의 실제로 탐라국의 高麗國으로 예속됨을 뜻하였는지를 물을 것이다.

高麗朝 耽羅國에 관한 여러 논문들과 記述들에서 바로 앞에서 말한 속종 10년 탐라군 설치라는 기록 때문에 고려왕조의 전기간, 즉 34대 474년 동안 탐라국은 중앙에서 파견된 外官⁶⁾에 의하여 변함없이 확립적으로 지배되어 왔느냐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둘째로 필자는 고려왕조 동안 탐라국이 高麗國과 결합하는 정치적 力關係가 시대에 따라서 변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변화의 매듭이라 할 수 있는 시기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전환기가 있다면 그 다음 시기와 차이를 지적하겠다.

이 시기 탐라국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고려왕조의 정치 제

2) 고창석, 위 책 : 705쪽

김봉옥, 「제주통사」(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40쪽.

3) 「高麗史」, 地理志 全羅道 耽羅縣條 : 肅宗十年 改托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4) 김봉옥, 앞의 책, 40-42쪽.

5) 恭愍王 23年(1274), 秋7月 戊子 : 敕曰 耽羅國於海中 世修職貢 垂五百載; 恭愍王 11年(1362) 8월 병신 : 耽羅牧胡 一 以星主高福壽叛; 禔王 12年(1386), 7월 : (李)行乃率星主高臣傑子鳳禮以還 耽羅歸順始此(이상 「高麗史」; 이하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으면 高麗朝 史料는 「高麗史」에 의거 제출한 것이다).

6) 고창석, 김봉옥 씨의 저술에 고려 중앙에서 탐라국에 파견되어 온 官人들을 서울에서 온 관인이라 해서 「京來官」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한 호칭방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中央官職을 뜻하는 「京官」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필자는 고려왕조에서 보통 州府郡縣에 파견된 지방행정관을 外官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따라서 탐라국에 파견되어 온 관인을 外官이라고 하겠다(成宗 7年 判 : 諸道轉運使及外官……皆令就決於京官, 「고려사」, 刑法志, 職制).

도들과 그 구성원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고려왕조가 여러 지방들을 지배하려고 하였을 때, 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물질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연구들에 의하면 고려왕조는 중앙과 京畿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는 중요 지역들을 據點들로 하여 지방관인 外官을 파견하고 정치적 지배와 지방 잉여물 징수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기타 세부적인 업무들을 土着鄕豪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한다⁷⁾. 耽羅國이 高麗 外官을 통하여 지배되었다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지배 강도가 달랐을 것이며, 또한 그 지배 대상도 일정한 영역들에 한정되었을 것이며, 그 나머지 문제들에 관하여는 지방 토착세력에 게 일임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셋째로 필자는 고려조 탐라국의 지배는 중앙권력과 地方土豪 사이에 保護와 被保護라는 聯合에 불과했는지 아닌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언급 시기는 高麗國 太祖 8년(925)⁸⁾을 上限하여, 毅宗時(1146-1170)를 下限으로 하는 약 250년간 동안이다.

넷째로 한 논고에서 필자는 古代 耽羅가 百濟 文周王에게 方物을 獻上한 시기(문주왕 2년, 476)를 전후하여 初期 國家(pristine state)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 탐라국이 고려 肅宗 10년(1105)의 耽羅郡 설치와 더불어 그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했다⁹⁾. 필자는 여기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여 고대 탐라국이 고려 毅宗時(1146-1170) 초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고려시기 탐라국의 문제는 이미 여러 先學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史料收集이라든지 세세한 考證을 해왔다. 그래서 이 시기의 본도의 과거에 관하여 여러 사실들을 밝혀내어 鄕土史를 연구하는 後學들에게 계몽해주는 바가 현재도 다대하다. 필자는 이를 디딤돌로 하여 과연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한번 解釋을 시도해 보겠다. 왜냐하면 역사란 있었던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역사 연구자라는 認識主體가 있어서 그들의 認識 틀에 의하여 우리에게 再構成하여 再顯시킨 것에 불과하기

7) 河炫綱, 「地方勢力과 中央統制」(『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81), 48-94쪽.

8) 太祖 8년 11월: 耽羅貢方物.

9) 줄고(拙稿),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濟州島史研究』, 濟州島史研究會, 1994), 27-28쪽.

때문이다. 이 경우 역사 사료들을 역사 연구자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다시 再配列하고, 거기에 새로운 意味 附與와 評價를 내리는 歷史 解釋作業이야말로 知的 創造活動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덧붙여 둘 것은 이 글에서 별다른 지시없이 史料가 인용되었을 때, 그것은 「高麗史」에서 출처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耽羅國星主

1. 耽羅國과 時代區分 문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파는 歷史 時代區分 문제를 아주 중요시한다. 곧 역사 연구의 궁극 목표가 사회적 운동의 전체상을 추구하려는 한, 시대구분이 가장 응축된 결론적 이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연구는 항상 시대구분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특히 한국사에서 그 個別性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세계사적 普遍性과 관련하여 법칙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時代區分은 역사인식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한다. 물론 이 때 시대구분의 표준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기본적 지표로 하여, 보통 古代奴隸制, 中世封建制, 近代資本主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지금까지 본도 역사의 시대구분은 시대의 遠近이라든지 王朝 구별로 적당히 편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¹¹⁾. 한 사례로서 『濟州道誌』1(1993), 제2편 歷史를 보면 제1장 先史時代, 제2장 古代史(三國時代), 제3장 中世史(고려시대), 제4장·제5장(조선초기~말기), 제6장 最近世史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시대구분은 마르크스학파에 의하면 비과학적 연구태도라고 비난되지만, 그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마르크스학파의 시대구분은 공산주의의 계획과 실현이라는 동기와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매우 편파적이다. 둘째로, 언어는 본질적이 아니라 형식이다. 어느 한 기호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10) 姜晉哲,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에 대하여」(『歷史學報』 31, 1966); 永原慶二, 「時代區分論」(『講座日本史』 9, 東京大出版部, 1978); 李基白 編修, 「韓國史市民講座」 6, 一潮閣, 1990, 185-200쪽 등 참조.

11) 秦榮一, 앞의 논문, 63-65 쪽.

오직 동일한 문화적 공동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이 만들어낸 언어적 약속에 의하여 생겨난 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記號와 그것이 가르키는 對象 사이에는 일대일의 相應關係란 성립할 수 없게 마련이다¹²⁾. 이런 언어이론에 의하면 여하한 개념도 역사상 어떤 대상을 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점을 갖는 학자들 사이에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게 된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어떤 역사 개념이나 용어란 역사 대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언어적 有用性(utility)이나 便利性에 그 표준을 두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입견적 概念·範疇裝置를 일단 접어두고, 제주도의 역사 진행상황을 보면, 그것은 이 시기에 本土의 중앙 집권권력과 불가분하게 서로 얽혀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조 탐라국 역사를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星主·王子라는 토착 엘리트와 고려왕조의 중앙권력과 상호관계와 그 변화과정을 指標로 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대체로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武臣亂(毅宗 24년, 1170)을 전후하여 고려시대를 크게 양분하고 있다. 武臣執權期 이래 고려사회는 후기 고려사회로서 전기에는 볼 수 없었던 權門勢家の 등장, 農莊의 확대, 그리고 新興士大夫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혁이 발생했었다는 것이 그 구분의 논거이다¹³⁾. 필자는 武臣亂과 같은 뚜렷한 사건이 이 시기의 탐라국 역사에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강한 외부적 영향이 본도 내부에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서 毅宗時(24년 在位, 1146-1170) 耽羅縣 設置에 주목하여 이를 일단 時期區分의 下限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려왕조가 더욱 직접적으로 탐라국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을 고려 몽고 연합군의 본도 주둔과 그 행정관 耽羅國招討使(元宗 14년, 1273) 파견을 중시하여 이를 언급의 하한으로 삼겠다. 따라서 본고의 고찰 시기는 태조 8년부터 毅宗時까지 약 250년 동안이되, 그 언급할 시기는 耽羅國招討使 파견까지(원종 14) 한하겠다.

12)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서울대출판부, 1995), 45쪽. 여기서 간략하게 프랑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용어와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13)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11-14 쪽.

2. 耽羅國과 朝貢

우선 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시기의 탐라국이 얼마나 되는 인구와 어떤 생산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中國 唐代의 정치·경제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적인 『唐會要』(卷100 耽羅國條, 961년 편찬)에 의하면 그 당시 本島 戶口가 「八千」이었다고 한다¹⁴⁾. 여기에서 戶口는 「戶」라고 풀이할 수는 없고 「人口」 8,000명이라고 새겨진다. 만일 戶數라면 당시 본도 인구는 戶當 4~5명으로 잡으면 32,000~40,000명이나 되어 터무니없이 많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朝鮮王朝 端宗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15세기 전반기 본도 인구는 12,997명에 불과했다. 계속해서 인구는 현종 14년(1672) 29,578명; 정조 13년(1719) 39,762명; 철종 1년(1850) 79,910명; 고종 29년(1892) 88,268명이었다¹⁵⁾. 더욱이 다행스럽게도 고려시기에 三別抄反亂 鎮壓 직후(元宗 15년, 1274)에 濟州百姓 10,223명에 대한 식량공급에 관한 언급이 있다¹⁶⁾. 이것은 濟州島民의 일부가 아닌, 그 전체수를 가리켰다고도 여겨진다(15세기 前半期 인구 12,997명 참조).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봤을 때, 본고의 고찰 시기인 10~12세기 본도 인구는 대략 10,000명을 전후하지 않았는가 한다.

그리고 당시의 본도 토산물은 귤(橘子, 文宗 3년 12월 記事); 牛黃 牛角 牛皮 螺肉 榧子 海藻 龜甲(문종 6년 3월); 名馬(문종 27년 11월); 豆 馬(『고려사』 列傳 金之錫 傳) 등이었다. 그 외에도 본도는 大船 2척을 건조할 정도로 상당한 造船能力을 갖고 있었다(顯宗 2년, 耽羅人來 獻大船二艘).

탐라국의 토착 지배세력과 고려 중앙집권력이 서로 얼마간 강도를 갖고 연합하고 있었느냐를 탐라의 시대구분에서 지표로 삼아올 때, 우리는 星主·王子가 탐라지역 토착 엘리트로서 고려왕정에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行政, 司法, 經濟的 分配 등에서 자율적인 기능을 행사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는 高麗에서 본도에 外官을 파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여겨진다. 탐라주재의 外官은 托羅를 고쳐 耽羅郡으로 했다는 肅宗 10년(1105)을 그 파

14) 耽羅國在新羅武州海上(中略)戶口八千.

15) 『濟州道誌』 1(1993), 제1편 自然的 基礎, 459쪽.

16) 『高麗史』 원종 15년 2월, 濟州百姓一萬二百二十三人 悉行供給.

건 開始 연대로 생각할 볼 수도 있다¹⁷⁾. 그러나 필자는 이 記事 이후에 탐라에 외관의 파견이나 임명 기록이 史料에 출현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이때 耽羅郡 설치의 高麗가 지방관 파견을 위한 행정조직의 組織表上 또는 圖式上 計劃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한다. 왜냐하면 「改托羅爲耽羅郡」하였다는 이 기록의 소재는 「高麗史」地理志에서도 「三神人從地聳出」하였고, 高·良·夫의 姓氏가 나오는 「三姓神話」에 덧붙여진 가장 신빙성이 없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記事의 부분에서 前後해서 「耽羅」라고 기재하다가 갑자기 「托羅」를 「耽羅郡」으로 개정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못하다. 이것은 아마도 이 地理志 編修者 梁誠之¹⁸⁾의 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탐라국에 外官이 실제로 부임한 것은 毅宗(在位 24년:1147-1170) 年間이었으라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대 高麗朝廷은 도식상 편성되었던 탐라군을 耽羅縣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지 않았는가 한다. 고창석 교수는 구체적으로 탐라군이 탐라현으로 강등된 것은 毅宗 7년(1153) 경이며, 그리고 기록상 최초로 탐라국에 파견된 外官인 縣令官은 毅宗 16년(1162) 경에 부임한 최척경(崔陟卿)이라고 추정한다¹⁹⁾. 필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탐라국의 시대구분에서 縣令官 파견 이전을 탐라국 전기의 下限으로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耽羅國前期란 탐라가 高麗 太祖에게 貢物을 받쳤던 태조 8년(925)²⁰⁾에서 시작하여 최척경의 耽羅縣令官 취임(의종 16년, 1162)하여 縣令官 시대가 개막된 毅宗時(의종 24년 武臣亂 발발)까지 245년간의 탐라국 시대를 말한다.

이 시기 탐라국을 외부적으로 대표한 것은 星主와 王子라는 존재들이었다. 우선 「高麗史」의 기록 중, 그들에 관한 모습을 보자.

- * 太祖 21년 冬12월,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 * 顯宗 15년 秋7월, 以耽羅營長周物子高沒 竝爲雲麾大將軍上護軍.
- * 顯宗 20년 6월, 耽羅世子孤烏弩來朝 授游擊將軍.
- * 靖宗 9년 2월, 托羅星主游擊將軍加利奏 王子豆羅近因卒 一日不可無嗣 請以號仍爲王子 仍獻方物.

17) 「高麗史」, 地理志 全羅道 耽羅縣條: 肅宗十年改托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18) 文暉鉉, 「耽羅國 星主. 王子考」(「星主」4, 高氏宗門會, 1990, 123-126쪽).
 19) 고창석, 「高麗朝 濟州民亂의 性格(補)」(「濟州史學」3, 濟州大學校 史學科, 1987), 5쪽).
 20) 「고려사」 태조 8년 11월 기축: 耽羅貢方物.

- * 文宗 7년 2월,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 來獻(中略) 王授王子中虎將軍.
- * 文宗 9년 2월,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 * 文宗 16년 2월, 耽羅高叶等 來獻土物; 冬十月 己卯, 耽羅星主高逸 來獻方物.
- * 文宗 17년 3월, 耽羅新星主豆良來朝 特授明威將軍.
- * 文宗 22년 3월, 耽羅星主游擊將軍加也仍 來獻土物.
- * 宣宗 3년 2월, 托羅游擊將軍加於乃等 來賀獻方物.
- * 宣宗 7년 春正月, 禮賓省據托羅句當使申狀奏 星主游擊將軍加良仍死 母弟陪戎副校尉高福令繼之 贈賻之物 宜準舊例支送 制可.
- * 宣宗 9년 2월, 耽羅星主懿仁 來獻土物 加定遠將軍 賜衣帶.
- * 肅宗 元年 9월, 托羅星主遣人 來賀即位.
- * 肅宗 6년 冬10월, 以托羅星主陪戎副尉具代爲游擊將軍.
- * 毅宗 7년 11월, 耽羅縣徒上仁勇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 來獻方物.

토착 엘리트에 관한 기록들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는 사항은 그들의 姓氏에 관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탐라국의 토착세력 중에 재일로 꼽히는 高氏가 등장하였는가 하는 문제다. 『東文選』에 수록된 「星主高氏家傳」, 저자 미상인 「瀛洲誌」, 그리고 「高麗史」 地理志 등에서 탐라국 開國初부터 高氏라는 姓氏가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新羅에서도 6세기 중엽 眞興王代까지 귀족출신인 신하들은 물론이고 왕족까지도 姓氏를 갖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토착세력에 불과한 탐라국 지배세력들은 성씨를 가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윗 사료들을 보면, 탐라국 토착의 지배세력이 高氏를 칭한 것은 아마도 고려중기 이후였다. 현종 15년(1024)에 耽羅酋長 周物의 아들인 高沒이 최초로 高氏를 칭하고 있다. 이어서 顯宗 20년 耽羅世子 孤烏弩, 靖宗 9년(1041) 耽羅星主 加利와 王子 號仍, 文宗 7년(1053) 탐라국 왕자의 아들인 古物, 문종 9년 耽羅國首領 高漢, 문종 16년 탐라국 高叶과 高逸, 문종 22년(1068) 加良仍, 宣宗 7년 가랑잉의 아우 高福令 등이 高氏와 관련된 성주·왕자들이었다.

그리고 孤·古·加·具·號 등으로 표기된 姓名은 「高」란 單一字 姓氏로 정착되기 이전에 「고」의 음을 서로 다른 漢字를 빌어서 표현한 同音異語의 借字

21) 문경현, 앞의 논문, 133-134 쪽.

表記라 할 수 있다²²⁾. 탐라국의 성주·왕자로 칭해진 토착 엘리트가 그들의 리니지²³⁾ (lineage, 單線家系集團)를 「高」 姓氏로 호칭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자칭한 것은 11세기 전반기 顯宗朝(1010-1031)에서 시작하여,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전반기인 文宗朝(1047-1082)와 毅宗朝(1147-1170)에 高維와 高兆基가²⁴⁾ 上級 京官으로 출세함으로써 그들의 家門의 영예를 확고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11세기 이후 高氏 리니지는 高麗朝廷에서 출세와 그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토착기반인 탐라국에서 그들 집단의 위치와 위신을 높이고, 그리고 확고하고도 독점적으로 굳혀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그들과 고려조정 사이에는 서로 지배권력을 매개로 하여 느슨한 동맹관계에 있었다 하겠다.

그리고 高氏 리니지는 토착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三姓神話를 창출하지 않았는가 한다.

* (恭愍王 16년 林樸) 爲濟州宜撫使 樸至州 謂萬戶曰 達達牧子喜反側 君宜盡心撫綏 勿令生事 又謂星主王子曰 君輩乃神人之後 入新羅爲星主 入本朝爲王子 服事歷代 歷代之待君輩亦甚厚 君輩宜各一心服事 勿與牧子屬變 於是星主王子及軍民 皆俯伏曰 敢不唯命(下略)(「高麗史」列傳 林樸 傳).

공민왕 16년(1367) 제주선무사 임박이 達達牧子の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토착 지배세력인 星主와 王子에게 너희들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해 온 「神人之後」, 곧 神人の 후예로서 앞으로도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이 사

22) 문경현, 앞의 논문, 136 쪽.

23) 진영일, 앞의 논문, 30-31 쪽. 여기서 필자는 「日本書紀」에 기재된 탐라국 王子 久麻藝와 久麻伎이란 인물들에 주목하여, 이 「久麻」 집단은 이미 모든 구성성원을 포괄하는 단위로 정의되는 「氏族(clan)」 개념이 아니라, 그것에서 분리되어 나온 리니지(lineage, 單線家系集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친족집단으로 추정하였다. 그들은 고려왕조 이전에도 토착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주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재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토대하여 중심성을 구체화하고 인간을 차별하는 일련의 조직들을 가진 初期國家(pristine state)를 형성하였다. 이 논고에서 그들이 주도하던 탐라국의 종언을 고려 숙종 10년(1105) 耽羅郡 설치 연대로 잡았다.

24) 高兆基는 毅宗朝에 들어와서 判戶部事, 判兵部事, 判吏部事, 中書侍郎平章事 등의 최고직책을 역임하였다. 吏部, 兵部, 戶部の 장관직, 그리고 수상직인 中書侍郎平章事는 고려왕조의 관직중 가장 중요한 포스트였다(「高麗史」, 毅宗 2년 3월, 12월; 3년 4월, 12월; 4년 12월 記事參照).

료만을 가지고는 「神人」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유명한 「高麗史」地理志에 기재된 「三神人從地蠶出」²⁵⁾ 하였다는 三姓神話와 관련되지 않는가 한다. 일단 이렇게 추정해보면 11세기 초엽부터 확고하게 탐라국 토착 엘리트로서 자리잡은 高氏 리니지는 그들의 토착적인 존재를 「三神人」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의 후예로서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토착권력을 神聖化하는 동시에 그 正統性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三姓神話」 성립은 최소한 11세기, 즉 顯宗~文宗年間(1009-1083)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²⁶⁾. 그리고 이 神話는 아득한 때로부터 제주도 백성의 신앙형태였던 샤마니즘(shamanism)²⁷⁾을 素材로 삼아, 거기 에다 高氏 리니지의 탐라사회에서 주도성을 짚어주지 않았는가 한다.

토착 고씨는 고려중기 毅宗 16년(1162) 外官 崔陟卿의 赴任 때까지 탐라토착사회에서 지배권력의 차등적 배분, 司法上 분쟁들의 해결, 경제적 생산활동과 재분배의 관리 등, 여러 영역들에 걸쳐서 자율적 기능을 행사하였다고 추정된다. 곧 그들은 지방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으며, 고려국에 바란 것은 이러한 주도권을 보장해 줄 정도의 권위였을 것이다. 高麗에서도 이 시기에 탐라국을 완전히 방임한 것이 아니라 高氏 리니지에게 權威를 부여한 대가로 경제적 잉여물 貢納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간단한 연락기구를 본도에 두고 있었다. 이것이 句當使 파견이었다.

* 文宗 33년(1079) 冬11월, 耽羅句當使尹應均 獻大眞珠二枚 光耀如星 時人謂夜明珠.

* 宣宗 7년(1090) 春正月, 禮賓省據托羅句當使申狀奏 星主游擊將軍加良仍死 母弟陪戎副尉高福令繼之(下略).

25) 「高麗史」地理志：耽羅縣 在全羅南道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蠶出 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下略).

26) 金奉鉉, 「濟州島歷史誌」(1960), 18-20쪽. 毛興穴(三姓穴)과 三姓祠는 조선왕조 英祖 39년(1763) 이후 제주도 통치를 위해 파견된 外官牧使가 도민중 토호세력가의 高良夫 三姓을 개국시조로 꾸며내고 그것을 신격화하여 우매한 농민대중을 속여서 착취하기 쉽게 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한다.

27) 三姓神話의 삽화와 소화들은 현재 제주도에서 구전하는 설화들 중 巫俗의 堂神 본풀이와 극히 비슷하다. 따라서 三姓神話는 본래 三姓氏族의 조상 본풀이요, 이 씨족이 숭앙하던 당본풀이적 성격의 신화였다고 한다(玄容駿, 「三姓神話研究」,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219쪽).

이 때 파견된 句當使는 탐라국 토착세력의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島内の 여러 사정들을 살펴서 중앙에 보고하는 감독·연락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本島의 土産物이라든지 특수한 자원을 조사하여 貢納하게 하든지 이용하고 있었다.

* 文宗 6년 3월,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從之.

* 文宗 12년 8월, 王欲於耽羅及靈岩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中略)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伐材 過海
創新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中略) 從之.

이렇게 文宗 때에 탐라 토착 엘리트는 중앙정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 100포라든지 목재를 伐採하여 本土에 실어나르고 있었다. 탐라국측에서 高麗王廷에 바치는 이런 朝貢은 그 대신에 중앙정부로부터 土豪들의 對內的인 권위를 부여받는 데에 대한 反對給付的인 것이었다. 이 업무는 탐라에 파견된 句當使는 이런 업무를 土豪들과 협정하여 징수했을 것이다. 그 이외의 전반적인 일상 업무는 토호들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졌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高麗朝 創業(918) 이전부터 毅宗 16년(1162) 경에 外官이 파견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다. 따라서 탐라국은 숙종 10년(1105) 耽羅郡이 설치되었다는 기록과 더불어 그 自律權이 박탈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組織表上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탐라국은 그 독립성을 毅宗代이거나 그 이후에도 유지했던 것이다.

Ⅲ. 皇帝와 諸侯

1. 耽羅 : 諸侯國

고려는 전국과 더불어 지방제도가 일시에 그리고 획일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럴 힘도 없었다. 고려는 成宗 2년(983)에야 전국의 12개 州에 州牧이란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고려 郡縣制의 대체적인 골격이 갖추어진 것은 顯宗 9년(1018) 4都護·8牧·56知州郡事·28鎮將·20縣令이 설치되는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모든 州縣에 外官이 파견된 것이 아니었고, 外官이 없는 州縣 즉 屬縣도 많았는데, 중앙정부는 이들 屬縣과 直隸關係를 갖지 않고,

外官이 있는 州縣, 즉 主縣만을 직접 파악하였다. 따라서 屬縣은 직접 중앙과 연결하지 못하고 主縣의 外官을 통하여 지배를 받았다. 국가는 屬縣에도 租賦와 蘇役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外官이 파견된 主縣을 통한 간접지배라고 할 수 있다²⁸⁾. 그리고 外官이 설치된 行政單位의 총수가 146 개소였는데 비하여 地方官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무려 361 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屬縣이 광범위하게 있었다(主縣: 屬縣=1:2.5)²⁹⁾. 결국 고려 郡縣制는 州郡縣이 획일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라, 主縣과 屬縣 사이에 領屬關係를 이루는 重層的構造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高麗史』地理志에 의하면, 耽羅縣은 全羅道 羅州牧 條項에 기재되어 있다. 물론 탐라현은 羅州牧에 領屬되었던 屬縣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直牒關係에 있었던 主縣이었다.

고려가 全領土를 郡縣制를 통하여 직접 획일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시 탐라국의 대외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 즉 국가가 그 권력을 관철하려 했을 때 그 地方, 즉 下部構造를 통제할 수 있는 兵站(logistics) 能力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중요하므로, 일단 世界史的 視座에서 國家와 그 下部構造의 權力(infrastructural power)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자.

地域的 權力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적 하부구조는 交通路(communification)이다. 특히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고대세계에서 군대를 이동시킬 경우, 과연 얼마 정도의 군대를 며칠 동안 약탈이나 중간 補給基地 없이 보급·수송·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현실적인 兵站問題를 해결해야 한다.

고대세계에서 중대한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병력 10,000~20,000명과 雜役夫 5,000명 정도를 상상하면, 그 군대는 아무리 많은 짐운반용 동물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며칠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 동물과 병정은 행군도중에 식량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된 군대일지라도 그 생존기간은 3일 정도였다. 이 결론은 그리스와 로마군대의 배급제도에 의해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곡물·건빵으로 지급된 보급품이 운반될 수 있는 한계는 3일간이었다. 이것이 세계정복국가들에 관한 우리의 이미지가 기대할 수 있는 한 극단적으로

28) 邊太燮, 「高麗前期의 外官制」(『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7), 135쪽.

29) 河炫綱, 「地方勢力과 中央統制」(『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81), 69쪽.

냉정한 토대이다. 그리고 고대세계 군대는 일일 평균 行軍速度는 30km 이하였다고 추정되나, 그러나 대부분 그 이하였다. 최대 행군속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최고도로 능률적인 군대라도 3일 동안 90km를 행군할 수 있을 뿐이었다³⁰⁾.

이런 모든 병참적 제한 조건들은 고대세계 정복국가들이 중간 보급기지 없이 직접 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범위가 겨우 반경 90km 이내, 즉 행군일정 3일 정도로 제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中世世界에서는 대부분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강제적으로 병참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집권력이 붕괴되자, 중앙정부가 관리·지휘하는 군대의 동원과 보급도 아울러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방별로 그 지역의 엘리트인 專門武士團에 의한 秩序構築 작업, 즉 地方分權體制가 형성되었다고 한다³¹⁾.

이런 병참적 한계를 극복하여 제국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4개의 중요한 전략이 개발되었다. 우선 두 개, 즉 被保護制度和 직접적 군사지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효과가 적었다. 다른 두 개, 즉 強制的 協力(compulsory cooperration)과 지배계급의 공동된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이 제국 지배자에게 더욱 큰 수단을 제공하였다³²⁾. 강제적 협동과 응집된 지배계급의 문화란 두 체제에 의해 지배된 帝國의 공통점은 貴族制的(aristocratic)이었다는 것이다. 貴族帝國들은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고, 토지가 제공하는 경제·군사·정치적 權力根源을 통제하는 지배계급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그리고 그 지배는 관념적으로 귀족들의 우월성에 관한 族譜的 주장에 의해 표현되었다. 이 경우에 君主의 專制權(despotic power)이란 그야말로 그렇다는 이데올로기적 虛偽에 불과하며, 사회를 관통하며 병참적 정치적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下部構造의 權力(infrastructural power)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사상 제국의 전제군주들에 관한 분명한 점은 그 하부구조적 권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며, 귀족들이 소유한 이러한 하부구조 때문에 군주들은 귀족계급에 의존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지방 수준에서 여러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부구조는

30)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137-142.

31) Peter Duus, "Feudalism in Japan", Alfred A. Knopf, New York, 1967, pp. 3-13.

32) Michael Mann, 앞의 책, 145-146 쪽.

귀족층의 손에 장악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국들은 실제상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소략하게 연합되고 있었으며, 지방분권화되어 분렬하는 경향이 있었다³³⁾.

이런 세계사적 관점은 우리가 고려왕조와 탐라국에 관하여 示唆하는 바가 많다. 우선 고려의 地方郡縣 支配의 未熟性이다. 지방관인 外官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外官의 주재 지역들보다도 2배 반이나 많았다. 이것은 고려국가가 아직 지방향촌을 일률적으로 지배할만한 하부구조 권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에는 중요 거점인 主縣들에만 外官이 파견되어 그 지역과 周邊部의 土豪監視, 貢物徵收, 그리고 治安維持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主縣·屬縣 가릴 것 없이 향촌의 실제적 하부구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鄉吏階層, 특히 戶長階層이었다³⁴⁾.

이 시기의 탐라국 토착 엘리트는 本土의 戶長層 이상으로 자율적 권력을 가졌으며, 또 그것을 왕조에 대한 반역 이외에는 생활세계 전반에 걸쳐서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국은 이들에 대한 직접적·물리적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으므로 간접적 통제를 가하여 이들을 고려 통치질서 속에 편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곧 이것은 고려국이 현종 15년(1024)~의종 7년(1153) 동안에 탐라국 토착 엘리트인 星主·王子 계층에 대한 武散階³⁵⁾ 授爵으로 나타났다. 탐라국 지배세력이 받은 무산계는 雲廳大將軍(從3品)·明威將軍(從4品下)·定遠將軍(正5品上)·游擊將軍(從5품하)·振威校尉(從6품상)·仁勇副尉(從9품하)·陪戎校尉(從9품하)·陪戎副尉(從9품하)의 8등급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의 기재에 의하면 성주(추장)에게는 운휘대장군·명위장군·

33) Michael Mann, 앞의 책, 142-155 쪽.

34) 훨씬 후대 조선시대의 상태이지자만, 참고삼아 全羅道에서 本島에 이르는 生活日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漢陽을 기점으로 하여 水原 1일정, 公州 4일정, 全州 6일정, 羅州 8일정 半, 康津 10일정, 그리고 耽羅까지는 11일정 半이나 소요되었다. 이런 숫자는 天候가 순조로울 때 最適 日程에 불과하다 (千寬宇 編, 『韓國史大系』 11(便覽 1), 三珍社, 1974, 62-63쪽). 하여튼 지금 시점(1995년 10월)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곤란한 병참적 문제가 고려 통치자가 지방을 통제하려 할 때 그들 앞에 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 이 간단한 日程表를 가지고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5) 성종 14년(995)에 도입된 고려 武散階의 성격은 중국과는 달랐다. 중국에서는 武臣이 받았지만, 고려에서는 鄉吏 耽羅王族 女眞酋長 老兵 工匠 樂人들에게 수여되었다(김갑동, 「지배체제의 정비와 변천」, 『한국사』5, 한길사, 1994, 153쪽).

정원장군·유격장군이라는 正5品下 이상이 주어졌고, 성주·왕자의 아들이나 동생에게는 배용교위·배용부위 등 下級官爵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성주·왕자로 승격하면 유격장군장군 또는 그 이상의 상급관작으로 승진되었다³⁶⁾. 고려조는 탐라 토착세력에게 高次元 層位의 중앙적 권위와 위신을 부여하여 수단으로써 무산계 관작을 이용하여 그들의 對內的 권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反對給付로서 朝貢 의무를 부과하고, 이 지방의 토산물을 징발하여 중앙 재정의 일부를 채우고 있었다.

耽羅土豪들에 대한 무산계 수여는 의종 7년을 고비로 더 이상 안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毅宗時(1146-1170) 耽羅縣이 설치되었다는 「高麗史」地理志의 언급과 더불어 실제상 縣令官 崔陟卿의 부임 사실은 더 이상 토착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本島를 外官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 밑에 두려는 高麗國 정책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대 정복제국, 더 나아가서 그런 조직력을 잃은 중세국가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에 의한 원격지역의 지배가 극히 곤란하며, 따라서 그들의 통제권 행사는 하부권력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방 엘리트와 동맹에 의해 경제적 잉여물 징발이라든지 정치적 지배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本島가 고려조 일대에 하나의 「國」 자격으로서 그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가질 수 있었던 역사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고려가 朝貢, 屋主爵位의 계승을 위해 파견된 本島 使節에 대한 언급이 「高麗史」에서 12회 나온다. 여기에서 본도를 지칭할 때는 일정하게 國號로 부르다든지 「國」을 생략하고 단지 「耽羅」라고 하고 있으나 탐라가 하나의 독립된 政體를 나타내고 있었음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려국이 탐라국을 한 지방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탐라 屋主·王子를 地方鄕吏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 실례를 보면 「耽羅國太子末老」(태조 21년), 「耽羅酋長周物子高没」(현종 15), 「耽羅世子孤鳥弩」(현종 20), 「托羅國星主游擊將軍加利王子豆羅」(靖宗 9), 「耽羅國王子殊雲那」(문종 7), 「耽羅國首領高漢」(문종 9), 「耽羅星主高逸」(문종 16), 「耽羅新星主豆良」(문종 17), 「耽羅星主游擊將軍加也仍」(문종 22), 「耽羅星主懿仁」(宣宗 9), 「托羅新星主陪戎副尉具代」(숙종 6) 등으로 耽羅國主가 불리워 졌다. 적어도 이는 이 시기에 「耽羅國」 또는 「耽羅」는

36) 고창석, 「濟州道誌」 1, 708 쪽.

高麗國으로부터 海外에 위치한 하나의 獨立國家로서 정식으로 인정되고, 또한 그렇게 호칭되고 있었다.

고려왕조가 이렇게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인정한 것은 비단 耽羅國만은 아니었다. 고려는 인접한 契丹·女眞 酋長들이 조공하여 왔을 때도 武散階를 수여하여 그들을 고려왕조의 秩序圈 속으로 편입시키는 대외정책 「黷糜政策」을 써서 변경부 異民族을 통제하고 있었다³⁷⁾. 주변민족에 대한고려의 武散階 授爵은 단지 耽羅國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글안족과 여진족도 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고려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女眞族 酋長들도 「高」氏를 칭한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에 來朝하는 女眞·契丹의 추장과 使臣이 高氏를 姓氏로 칭한 것은 옛 영광된 고구려 왕족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³⁸⁾.

고려조 초기는 물론이고 중기·말기에 이르기까지 屬縣·屬郡이라든지 鄉·所·部曲 등의 특수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가 지방과 그 토착세력을 억제할만한 하부구조의 권력을 장악할만한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고려국은 대내적으로는 일부 주요거점, 즉 主縣을 왕조질서를 부과하는 거점으로 삼아 기타 지역을 간접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단 여기서 帝國이라 함은 어떤 영역에서 중심국가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 주위에 있는 複數의 諸國과 더불어 강제적 협동관계라든지 지배계급들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써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체제를 가정하자. 이런 체제의 경우, 고려국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중심국가 「皇帝國」로 想定하고, 주변지역의 글안족, 여진족, 그리고 耽羅族 등의 複數의 諸國을 각각 하급단위인 諸侯 「國王」으로서 대우하여 그들과 연맹하는 형태로서 그 주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 주변부의 여진과 글안처럼 耽羅國은 한반도 중심축인 高麗帝國 皇帝의 諸侯國이었다고 하겠다. 중심국

37) 金庠基,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국사상의 재문제』 4, 1959), 145-158.

38) 문경현, 앞 논문, 138-139 쪽.

인 고려 황제국과 주변 諸侯國인 탐라 사이에는 朝貢制度³⁹⁾를 통하여 상호 保護-被保護라는 동맹관계에 있었다. 물론 諸侯國의 內政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자율권을 가졌다. 이렇게 兩國의 지배자들 간에 황제-제후관계는 무력 개입없이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는 이를테면 매우 문화주의적인 「儒家」의 世界秩序("Confucian" world order)⁴⁰⁾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이런 관계를 유지시키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國際儀禮가 耽羅星主가 행하는 高麗國에 대한 朝貢과 그것을 위한 來朝였다.

이런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조공제도는 물론 중국의 대외정책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帝國을 어떤 영역의 중심국가로 생각하였을 경우, 그런 국가가 그 영역 주변부에 존재하는 다수의 이민족을 통제하는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병참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帝國的 制度와 秩序라는 형태를 떨 수밖에 없다. 고려왕조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에 국가질서를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皇帝」國의 제도와 그 관념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너무도 명백한 일이나 그 역사적 의미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몇몇 사례들을 보자. 적어도 高麗前期에는 고려 임금들 王이 아니라 「神聖皇帝」라든지 陛下⁴¹⁾라고 公文書에 기록하고 신하들은 口頭로 존칭하고 있었다⁴²⁾. 이러한 사실들은 나중에 名分을 중시하는 조선왕조 초기 高麗史 編修官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황제들에 대한 존칭들, 즉 「凡稱宗 稱陛下 太后 太子 節日 制詔之類」는 역사상 있던 그대로 기록하는 편찬방침이 정해지게 되었다(「雖涉僭諱 今從當時所稱書之 以存其實」)⁴³⁾. 여기에 나오는 호칭은 모두가 제후국의 王이 아닌 帝國皇帝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은 주

39) 「朝貢」制度란 중국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가정, 즉 中國皇帝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황제의 우월성이란 주변 군주들을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 上下關係의 位階秩序 속에 편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황제는 屬國 君主에게 即位 任命狀, 군사적 보호, 중국과의 交易權 등을 주었다. 대신 屬國「諸侯國」은 중국 황제의 年號 사용, 貢物 上納 등의 儀禮를 통하여 황제의 절대권을 인정해야만 했다(E. O. Reischauer & J.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pp. 315-316).

40) 위의 책, 317 쪽.

41) 「고려사절요」 인종 12년 5월: 陛下 祗畏天命 思聞直言 下詔求言. 여기서 「陛下」와 「下詔(書)」 등은 황제와 그 명령에 대한 尊稱語이다.

42) 「高麗史節要」 仁宗 12년 5월: 今後凡上章疏及公行案牘 毋得稱神聖皇帝.

43) 邊太覺, 「高麗史」의 研究(삼영사, 1982), 46쪽.

지의 사실이다.

한마디로 高麗國은 주변 이민족들의 정치단위들을 제후국들로 간주하고 자신은 이들을 통제하는 중심국가, 즉 제국으로 擬制하고 있었다. 이에 준거하여, 이 시기 耽羅國星主는 高麗皇帝의 한 諸侯로서 조공했으며, 그들의 상호관계는 國內次元이 아닌, 國際次元의 정치문제였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朝貢」이라는 諸侯「王」이 皇帝에게 복종을 표시하는 儒家的 禮秩序의 상징하는 土產物 納貢과 「來朝」이었다. 해당되는 몇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肅宗 卽位年 12월,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醢(中略)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 東西蕃 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 * 文宗 27년 11월,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翌日大會 大宋 黑水 耽羅 日本 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 * 肅宗 5년 11월, 宋商 托羅 女眞等 來獻土物.

탐라국은 宋·黑水靺鞨·日本 등과 더불어 한 독립된 「諸國」의 하나로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자격으로 고려국에 대하여 土物을 바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상술한 견해, 즉 탐라가 적어도 12세기 중엽(縣令官 파견 이전의 毅宗 年間)까지 고려국의 一諸侯國으로서 내정간섭이 없었던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탐라국의 星主라든지 使節이 파견된 것은 이렇게 고려국의 名節 八關會, 임금의 卽位, 太子 冊立祝賀, 星主王子의 爵位世襲 등의 때였으며, 이 시기(高麗國創業, 918~縣令官 부임, 1162까지 244년) 동안에 13회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대략 매 19년 1회 꼴로 탐라국 사절이 고려왕정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탐라 토착 지배자가 자기 재직중 1회 정도로 사절을 보낸단지 자기가 직접 간 것이 아닌가 한다⁴⁴⁾. 이것은 조공제도가 매우 형식적인 國際的 의례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耽羅縣 설치된 후에는 탐라국의 「來朝」, 이에 따른 方物(土產物) 獻上과 武散階 授與 등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국이 더 이상 한 국가로서 탐라국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는 증거

44) 고려 475년 동안에 34대 왕들이 즉위하고 있었다. 한 왕은 14년 정도 재위하고 있었다.

로 생각된다.

2. 耽羅國 : 外官 그리고 反亂

역사 기록상 毅宗 16년(1162) 최척경이 처음으로 본도에 부임에 온 이래 속속 外官들이 파견되어 왔다. 고려사에서 그들의 직함과 파견되어 온 연대가 분명한 인물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이 論考에서는 언급 시기를 元宗 14년, 1273, 耽羅國招討使 失里伯이 本島駐屯할 때까지 그 下限). 縣令 최척경의 再任(의종 22년, 1168), 縣令 張允文(明宗 16, 1186), 副使 崔滋(高宗 初), 判官 金丘(高宗 21, 1234), 副使 盧孝貞(고종 31, 1244), 判官 李珪(고종 31, 1244), 副使 金之錫(고종), 副使 羅得瓊(元宗 1, 1260), 副使 崔托(元宗 8, 1267) 등이 있다. 기타 按撫使들로서 趙冬曦(의종 22, 1168), 獨孤忠, 池資深(둘다 明宗 16, 1186), 張允文, 李唐積(둘다 神宗 5, 1202) 등이 來島하고 있었다. 그리고 清白吏로 이름난 年代未詳의 副使 慶世封, 부패한 관리로 지목되어 貪贓免職을 남긴 井奇와 李著(둘다 年代未詳) 등이 눈에 띈다. 按撫使란 睿宗 2년(1107)에 각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의 疾苦와 守令의 잘잘못을 살피는 임시 관직이었다. 이 外官職은 忠烈王 2년(1276)에 巡撫使로 변경되었다⁴⁵⁾. 따라서 기록상 본도 주재한 정식 外官은 縣令官(7품官 3명, 判官(7품) 2명, 副使(6품관) 6명 포함 9명 불과하다. 高宗 대로부터 본도 외관의 官品이 縣令官(7품)에서 副使(6품)으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의종 16년~원종 14년 즉 111년 동안 15명(관직·연대미상한 3명 포함)만이 본도에 부임해 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는 史書의 누락 현상이거나, 또는 외관 파견이 규칙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서 공백기간이 많았거나 한 것이다. 필자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조선시대의 현령·현감: 1,800일 기한 주재).

이 기간 동안 본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백성 반란이 발생하고, 아울러 탐관오리에 관한 기사가 「고려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 毅宗 22년 11월, 耽羅按撫使趙冬曦入覲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官吏不法 賊首良首等謀叛 逐守宰 王命冬曦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 餘皆賜穀帛 以撫之.

* 神宗 5년 冬10월, 耽羅叛; 同年 12월, 耽羅按撫使張允文李唐積奏 賊魁煩

45) 이홍직, 「국사대사전」 按撫使 條(三榮出版社, 1984), 878쪽.

石煩守等 皆伏誅.

* 金之錫未詳其世系 高宗末爲濟州副使 州俗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 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以故守宰 雖貧者皆致富 有井奇李著二人 嘗守是州 俱坐贓免之 之錫到州日 卽貢豆馬 選廉吏十人以充衙吏 政清如水 吏民懷服(下略). (『高麗史』列傳, 金之錫傳, 高宗 在位年間1213-1259).

의종 22년 탐라안무사 조동회의 말에서 당시 탐라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탐라가 독립적 지위에 있었을 때에는 백성이 그들의 생업을 즐거워하였으나 근래에 외관들이 파견되어 옴으로써 그들과 작당한 관리들의 불법부정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도민 良守 등이 모반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고려가 독립된 제후국으로 있었을 때는 관리들이 백성에 대한 징발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耽羅星主들은 고려국의 慶事日이나 자신들의 직위세습을 위해 대략 20년 1회 정도로 高氏 리니지에서 자체 조달한 특정한 토산물을 고려조정에 자발적으로 헌상하면 그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 잉여를 둘러싼 島內 내부적 갈등, 즉 백성에 대한 관리의 무리한 징발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외관이 부임해 오자 백성들에 콩과 말에 대한 징발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어 縣令과 그를 보좌하는 土着 衙吏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었다. 良守 등은 이에 반발하여 모반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제까지 高麗 本土에서나 있었던 국가에 대한 租稅負擔, 특히 濟州⁴⁶⁾ 地方의 特産物 徵收와 獻納「貢賦」가 생겨났다. 이 백성에 대한 경제 잉여물 징발이란 탐라국 유사이래 이제까지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회경제적 대재난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本島 百姓의 반발이 良守란 인물과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라는 분출되었다고 생각된다.

外官이 파견되어 오고, 고려왕조에 대한 貢物이 國家租賦의 일환으로 貢納되면서 본도는 서서히 고려국의 한 地方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본도를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고려왕조 질서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았다. 필자의 생각에 결정적인 고려국의 탐라국 지배에서 결정적인 것은 본도에서 벌어진 三別抄의 고려정부에 저항(원종 11년 11월~14년 6월)이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된 후, 元宗 14년(1273)에 耽羅招討使가 설치되었으며,

46) 「濟州」라는 명칭이 史書에 처음 출현은 高宗 16년 2월 기사이다(宋商都綱金仁美等二人 偕濟州飄風民採用才等二十八人來).

그 招討使인 失里伯이 麗蒙聯合軍 1,400인⁴⁷⁾과 더불어 주둔하게 된 때부터였다. 이제부터는 고려국은 군대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탐라국은 이 때부터 유사이래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高麗國이라는 한 나라의 한 地方, 즉 耽羅縣으로 격하되었다 하겠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고려 태조 8년 때부터 원종 14년 기간 동안 탐라국의 역사상황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대충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재검토되고 그리고 종전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다.

(1) 탐라국의 시대구분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통설상 사회경제적 내부 요인들의 변동, 즉 사회구성체의 변화에 의하여 시대구분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海上 島嶼로서 耽羅國史에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有用性」이란 관점에서 탐라의 시대구분을 고려국의 지방제도의 관철된 정도, 縣令官 실제 파견 여부를 지표로 하여, 12세기 중기(毅宗 1146-1170), 특히 의종 초기 연간을 탐라국의 획기적 시기, 즉 서기 5세기 말경부터 계속되어 왔던 탐라국이 그 독립성을 상실한 시대로 보았다(고대 탐라국은 700년 정도 계속된 해상 왕국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려조 탐라국을 전기와 후기로 시대구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종 10년(1105) 耽羅郡 설치로 인하여 탐라가 고려국의 하나의 지방이 되었다는 종래의 견해는 「高麗史」地理志의 6字 이외에는 그 근거가 사실상 없으므로 인정되기 힘들다. 이에 근거하여 탐라가 숙종 10년 이후 고려국의 한 지방, 즉 耽羅郡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2) 탐라 토착 지배적인 家系가 그들의 리니지를 「高」 姓氏라고 칭한 것은 11세~12세기, 즉 고려중기라고 할 현종~문종 연간부터였다. 이때부터 高氏 리니지는 토착사회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굳혀나가기 위해서 「三姓神話」란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그 지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국에 조공을 하였다. 그 回數는 대강 20년 1회 정도로서 한 星主의 在位 중에 1회 정도였

47) 원종 15년 2월, (前略)又濟州留守官軍并小邦卒一千四百人.

다. 탐라국 지배 엘리트는 고려국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朝貢을 매개하여 内外에서 그들의 지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 나갔다.

(3) 古代·中世世界를 막론하고 국가가 지방에 그 중앙권력을 관철할만한 병참적·물리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고려왕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계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방대한 屬縣을 主縣을 통해서 통제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국가, 즉 高麗國을 「帝國」으로 국가를 마련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을 「諸侯國」들로 상정하면서, 이들을 고려제국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외교정책 「羈縻政策」을 구사하였다. 이 경우 탐라국은 高麗帝國의 諸侯國 하나로서 형식적인 조공을 제외하고는 내부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졌다. 이 시기 탐라국과 고려국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이라는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였다고 하겠다.

(4) 12세기 중엽에 外官 縣令官이 본도 부임함으로써 이제까지 형식적이었던 고려국에 대한 貢納이 國家 租賦徵收로 전환되었다. 이런 본도 백성에 대한 경제적 징발은 本島 有史以來 없었던 일로서 본도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겠다. 이대부터 본도에서 反亂들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후부터 탐라국은 그 독립성을 상실하여 고려국의 한 地方縣으로 차츰 종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고려국이 그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三別抄反亂 진압 직후에 麗蒙 聯合軍 1,400명 本島 駐屯과 耽羅國招討使가 파견된 때(元宗 14년, 1273) 이후라고 일단 추정하였다.

필자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개 위와 같은 사실들이 고려전기 耽羅國 역사에서 문제로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역사 해석들이 필자의 잠정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하여 혼란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역사 사료들 속에서 모종의 질서를 찾아내서 그것을 드러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연구의 목적이기도 하고 즐거움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견해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몇몇 쟁점들이 이후에 다시 검토되고, 논의되고, 그리고 논박된다면, 그것은 바로 필자의 더할 수 없는 所望과 悅樂이 될 것이다